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040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D

3. E

4. F

5.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박근영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합57964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선택적으로,

가. 피고와 주식회사 N 사이에 2018. 3. 29.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예비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와 주식회사 N 사이에 2020. 9. 16.1) 체결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AN일자 접수 AO로 마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AP일자 접수 AQ로 마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와 주식회사 N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AR 및 AS 제품에 관한 사용권한 부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N에게 2019. 12. 31. 각 마친 국립전파연구원의 “AT” 인증번호에 대한 적합인증 등록과 “AU” 인증번호에 대한 적합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중 나., 다.항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자동차 고장진단기기 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2018. 6. 19. 폐업하였다. 원고 A은 N의 전(前) 대표이사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N의 전(前)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자동차 고장진단기기 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N의 전(前) 직원들인 K,

M, V, W가 2018. 3. 29. 설립하였다.

다. N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2항 상표권(이하 ‘제1, 2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피고는 2020. 9. 16. N과 사이에 제1, 2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N일자

제1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접수번호: AO, 기간: 2020. 9. 16.부터 2030. 9.

16.까지, 지정상품: 제35, 37, 42류)을, AP일자 제2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접수번호: AQ, 기간: 2020. 10. 26.부터 2029. 6. 14.까지, 지정상품: 제9류)을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2. 12. 국립전파연구원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 AR) 및 차량용 진단기(모델명: AS, 위 각 제품을 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을 하였다. N은 당시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선인증자로서 위 각 신청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12. 31.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하여 전파법상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인증(인증번호: AT)을, 차량용 진단기에 대하여 적합등록(인증번호: AU)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22, 23호증, 을 제13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들은 N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원고 A의 경우 구상금채권 포함)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2018. 3. 29. N로부터 N의 기능적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택적으로, 피고는 N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N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인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그 인적물적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N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지만 그 외형만 다른 것으로서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N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N이 피고에게 제1, 2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1, 2 상표권에 관하여 마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과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마친 적합인증 등록 및 적합등록을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營業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 21호증,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N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2018. 3. 29.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 N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N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營業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① N의 직원이었던 K이 N로부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3. 5.

특허권(등록번호: AD, 갑 제1호증 참조) 및 제1, 2 상표권을 양수하고(이전등록일은 각 AV이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K은 2019. 3. 28. N에게 위 특허권 및 상표권들을 다시

양도하였다.), 2018. 3. 23. 일부 사무집기를 양수한 사실, ② N의 직원이었던 M이 2018. 3. 21.

N로부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일부 사무집기를 양수한 사실, ③ N의 직원이었던 W가

2018. 3. 21. N로부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일부 사무집기 및 장비를 양수한 사실, ④

K, M, W 등이 피고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의 특허권, 제1, 2 상표권, 일부 사무집기 및

장비들이 피고 설립 이전에 K, M, W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된 사정을 두고

N이 2018. 3. 29. 피고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오히려 원고 A이 N 대표자 U 등을 상대로 광명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광명경찰서가

2020. 7. 17. 작성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N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불임금의 변제

등 명목으로 N의 자산을 일부씩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21호증 제6쪽에는 '고소인 중 1인도

회사 자산인 노트북과 대형 TV를 무상으로 가져간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 M, W가 N로부터

일부 자산을 위와 같이 각 양도받은 것도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4) 원고 A이 2018. 8. 27. 피고에게 N로부터 양도받은 주요 자산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갑 제9호증의 1 참조)을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V가 2018. 8. 31.

원고 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N과 피고는 적법한 절차, 계약에 의거하여 양도 및 양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2), (3)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 8. 31.자 내용증명우편의 기재만으로는 특정 자산의 양도를 넘어 N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제3의 가.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에 근무하는 N의 전(前) 직원은 K, M, V, W로서 4명에 불과하고 N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퇴사 후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피고가 N의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N과 피고 사이에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전제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인격 부인론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N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 2 상표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상표법 제97조 제1, 2항).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비독점적인 권리로서 상표권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후에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중복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N과 피고 사이의 2020. 9. 16.자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N로부터 제1, 2 상표권의 통상사용을 허락받는 대가로 피고는 N에게 매년 150만 원을 지급하되 상표권 사용료는 향후 상표권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작성일: 각 2020. 11. 9. 을 제17호증의 1, 2 참조)에는 제1, 2 상표권의 1차년도(2020. 9. 16.~2021. 9. 15.) 합계 사용료가 928,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N에게 위 감정평가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감정평가서상 제1, 2

상표권의 사용료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④ 통상사용권의 위와 같은 성격 및 위 통상사용권 설정 당시 N이 폐업 상태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N이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피고에게 제1, 2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위 상표권들의 재산적 가치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N의 적극재산이 사용료(또는 사용료채권)만큼 증가하게 되고 일반 채권자들이 증가된 적극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내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N과 피고 사이의 제1, 2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N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제조한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²⁾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N은 이 사건 각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기존에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법상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선인증자로서 위 신청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그러나 N이 피고 제조의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한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하여 선인증자로서 동의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N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N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용권한 부여계약이 체결되고 이로 인하여 N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도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오영상, 판사 이재혁

[별지1]

목 록

1. 상표권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원출원연월일			
	원출원번호			
	출원공고연월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00년 07월 24일		
	상표류구분수	6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0년 09월 25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35류 : 자동차 판매대행업, 자동차부품판매대행업, 소프트웨어판매대행업, 자료제공업, 상업적 전시회조직업, 상업정보제공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관리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구축업 제36류 :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전자제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본투자업, 개발금융업, 금융투자주선업, 투자금융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제37류 : 자동차수리업, 자동차부품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차량관리업, 컴퓨터하드웨어설치업, 전기통신기계기구수리업, 전자응용기계기구수리업, 제어용 기계기구수리업, 컴퓨터 하드웨어유지관리업, 실내장식업 제38류 : 인터넷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데이터통신업,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전자우편업, 컴퓨터통신업, 위성통신업, 밴(VAN)통신업, 무선통신업, 통신수단을이용한 호출서비스업 제41류 : 자동차정비기술학원교육업, 통신강좌업, 원격화상교육업, 교육정보제공업, 전자오락실경영업, 공연경영업, 유원지경영업, 오락설비공급업, 연주회진행업, 행사진행업 제42류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기술조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자동차장식업, 연구개발대행업, 행사개최대행업			

2. 상표권

상 표 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동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공고연월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1999년 05월 26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 설정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9년 06월 14일	
	지정상품	제09류 : 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저항측정기, 자동차용고장측정장치	
2번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 연월일		출 원 번 호
	공고 연월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연월일	2001년 12월 15일	상품류구분수
	지 정 상 품	제09류 : 휠밸런서(Wheel Balancer),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기록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습기계기구조종용 시뮬레이터, 배기가스측정기, 대연속정기	
			등록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순번	성명	근무기간	체불임금
1	A	2013. 7. 1.~2017. 10. 31.	224,456,417원
2	D	2013. 8. 1.~2018. 3. 9.	53,005,025원
3	E	2013. 10. 1.~2018. 3. 2.	42,674,728원
4	F	2013. 9. 1.~2018. 3. 2.	46,136,731원
5	G	2013. 7. 15.~2016. 10. 7.	23,858,637원
합계			390,131,538원

1) 원고들의 이 사건 2021.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예비적 청구취지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2020. 10. 26.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95호)

제2조(정의) ①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